



한국계 Maquiladora 를 위한 Executive Summary¹ October 25, 2007

2008 년 멕시코 세법개정

지난 9 월 14 일 멕시코 국회를 통과하고 10 월 1 일 관보를 통하여 공개한 2008 년도 개정세법은 2003 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면에서 많은 위헌시비와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마킬라도라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만간 마킬라도라에 대하여 긍정적인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중 참고가 될 사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1) 세법개정 취지:

- 조세시스템을 간단히하여 효율적으로 탈세를 방지한다.
- 연방에 자원과 배분기능을 집중한다.
- 국가차원의 투자를 지원할 조세수입을 늘린다.

(2)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

단일세율 법인세(Business Flat Rate Tax, 이하 “IETU” in Spanish 약자)

- 시행일자: 2008 년 1 월 1 일
- 자산세 (Asset tax)를 폐지하고 대신 IETU 를 신설
- IETU 는 미국의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와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법인세 (28%)와 별도로 계산, 서로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납부
- 현행 법인세 계산 방식과는 달리 현금흐름을 위주로 계산함
- IETU 세율: 2008 년: 16.5%, 2009 년: 17%, 2010 년과 이후년도: 17.5%
- IETU 산출방식:
 - (+) 총소득: 매출 또는 용역비 수금액 (선급금 포함)
 - (-) 총비용: 물품매입금 지급액, 고정자산 구입비, 세금지급액, 판매관리비 지급액 (급여 및 급여관련 세금, 복지후생비 제외)
 - (=) 과세소득
 - (x) IETU 단일세율
 - (-) IETU 계산방식에 의한 결손금 공제 x 단일세율: (Credit)
 - (-) 급여 및 급여관련세금, 복지후생비 공제 x 단일세율: (Credit)
 - (-) 현행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납부액
 - (-) IETU 예납액 (현행법인세와 같이 매월예납)
 - (=) IETU 납부의무 금액 (Tax due)

¹ 본 Summary 는 Choi, Kim & Park, LLP (CKP 회계법인)이 한국계 마킬라도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이며 이는 저희의 법률적인 해석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중대한 의사 결정 시에는 각자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Choi, Kim & Park, LLP
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s
October 25, 2007

- 2007 년말 현재 이월결손금, 재고자산은 감안치 않음
- 2008 년이후 고정자산 매입시 매입지급액 전액을 해당년도에 비용처리
- 동 개정세법 공포이후 고정자산 투자및 구입을 미루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2007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구입자산은 2008 년이후 3 년간 균등 비용처리
- 2007 년말 고정자산의 잔존 장부가격에 대하여는 매년 5%씩 10 년간 상각허용 (결론적으로 50% 만 허용)
- 이자비용, Royalty 비용등은 공제할 수 없음
- 매출이 발생한 후 1 년동안 수금되지 않으면 1 년이 경과하는 날짜에 수금된 것으로 간주
- 조세당국은 2011 년 6 월 30 일까지 IETU 적용의 효율성, 당초 취지부합여부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멕시코 연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현금예금세 (Tax on Cash Deposits)

- 시행일자: 2008 년 7 월 1 일
- 월간 현금예금 총액이 25,000 페소를 넘으면 매월 마지막날에 25,000 페소가 넘는 부분에 대하여 2% 의 세금을 원천징수
- 금융기관별로 모든구좌를 합해서 계산하며 징수일로부터 3 영업일내로 세무당국으로 자동이체
- 여러 은행을 이용할 경우 합산되지 않음
- 은행에 징수의무가 있으며 만일 연말 잔액이 세금징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당국에 15 일내 보고
- 조세당국은 해당 예금주에게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세금청구서를 발송하고 예금주는 15 영업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됨
- 현금예금세 납부액은 현행 법인세와 IETU 에서 공제할 수 있음

특별세 (Exercise Tax)

- 도박(Gambling), 상품 (Raffles and Prizes) 수입에 대하여 20% 원천징수
- Gasoline 과 Diesel 에 추가특별세 신설

(3) 세금환급신청에 대한 심사강화

- 환급신청 접수일로부터 40 일이내로 처리해야하며 환급의 정당성, 적정성을 조사하는 경우 90 일을 추가로 요구하는 현행제도에는 변함이 없음
- 다만 다른나라의 조세당국이나 세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해야하는 경우, 또는 이전가격이나 관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180 일로 늘어난다.
- 확인절차가 끝나면 10 일이내에 환급을 하여야 한다.
- 10,000 페소가 넘는 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해야한다. (종전 25,000 페소)

- (4) 조세당국은 감사목적에 따라 같은 기록을 여러차례 중복감사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 환급감사등으로 전체기록을 조사한 경우에도 법인세감사 목적으로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서명이 불확실하거나 진위가 의심이 될때는 직권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명문화 하였다.

Choi, Kim & Park, LLP
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s
October 25, 2007

- (5) 은행 입금기록이 납세자의 세무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누락금액 또는 불일치금액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600,000 페소가 넘는 대부금(Loans) 또는 자본금(Capital contribution or allowance for future capital contribution)을 받았을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 일이내로 조세당국(SAT)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소득으로 간주될 뿐아니라 보고미이행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 (6) 납세자가 현주소지에서 이사를 가거나 비었는데도 세무당국에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경영자/임원(Directors, Managers, or Sole administrators)이 연대하여 조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정식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문을 닫은 경우 경영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 (7) 회계사, 세법변호사등이 자문을 잘못해서 탈루세금이 생긴 경우 해당 자문인에게 35,000에서 55,000 페소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문시 서면으로 ‘동 자문은 조세당국의 의견과 다를 수 있고 당국에 의해 불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지 않은 경우 탈루세액의 10-20%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추가 벌금은 자문수수료의 두배를 넘지 않는다.
- (8) 각종 납세금액 계산시 공제세액 (tax credit) 항목들을 부주의나 실수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며 소급해서 수정할 수 없다.
- (9) 기부금등은 과세소득의 7%범위내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다. (미국: 10%)

CKP 해설

세법개정에 관하여

칼데론 정부가 멕시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으로 인하여 115 billion peso 의 세금징수액이 늘어날 것이고 이중 67.4%는 infrastructure 구축에 9.3%는 전력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등 금번 세법개정이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례 없는 단일세율법인세 (IETU)를 도입함으로써 그 영향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고 있으며 일부는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적잖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일정에 의하면 현행법인세와 최소한 4년은 같이 가지만 4년후에는 IETU 만 남게됩니다. 다만 멕시코 정부가 2011년 6월 30일까지 동 개정세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계획이 바뀔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4년간의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위헌소송등이 마무리되고 그 여러가지 검증이 끝난 후라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IETU 는 2007 년말 현재 재고자산 그리고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비용공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급여관련 비용도 총비용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세 정당성과 위험시비 등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사회보장제, 그리고 복지후생비등 급여관련 비용은 총비용항목이 아닌 Credit 항목에 포함시켜 결론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언제나 제외할 수 있는 임시항목인 Credit 항목에 포함시킨 조세당국의 의도를

Choi, Kim & Park, LLP
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s
October 25, 2007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IETU에 의하여 세금을 내게 되면 다른국가에서 외국세액납세 공제(Foreign tax credit)가 되지 않을 뿐아니라 현행세법에 의한 법인세와 비교해서 높은 세금을 내는 구조상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정부가 현행 법인세율을 28%까지 내렸지만 칼데론정부는 다른 무리한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세수를 늘리고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는 조세부담의 증가뿐 아니라 현행세법에 의한 회계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금 IETU를 계산하기 위한 다른 회계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해야하는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세금환급을 까다롭게 하고 세무감사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멕시코의 세금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세액공제(Credit)항목이 많은데 부주의나 실수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과 대부금과 자본금등 소득과 관련없는 거래가 있더라도 법정보고기한인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소득으로 분류되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입니다.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대로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무리한 조항들을 멕시코 세무당국에서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어서 금년내 시행세칙을 발표할 때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킬라도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003년 10월 30일자 팩스 대통령령에 의하여 임시로 도입되었던 마킬라도라 Safe Harbor 3% 감면안²이 2007년까지 연장되어서 지난 4년여동안 마킬라도라 Industry는 과거년도에 비해서 최소한 50%이상 세금을 적게내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마킬라도라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지만 최근 안정된 경제기반과 칼데론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적 안정으로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감면안이 2007년을 끝으로 더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IETU라는 최소세금까지 도입되어서 2008년 이후 마킬라도라는 2007년대비 최소한 2배이상 조세부담을 할 수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버드대 석사출신이며 친기업정책을 구호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칼데론이 마킬라도라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최근 마킬라도라 전국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흘렸는데 이전년도와 같은 수준(50%)의 조세감면안을 내놓던지 마킬라도라는 IETU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10월말 Cancun에서 열리는 전국 마킬라도라 컨벤션이 끝나면 어느정도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IETU 적용에서 마킬라도라가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² May 29, 2004 Executive Summary 참조

Choi, Kim & Park, LLP
Executive Summary for Korean Maquiladoras
October 25, 2007

마킬라도라는 미리 미국의 모기업이 선급금을 지원하고 마킬라도라는 세법규정³에 의한 임가공비를 계산하여 정기적으로 미국모기업에 청구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IETU는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급금도 총소득에 포함시키므로 적정한 통제를 요하며 공장건물등 고정자산 구입시 자금을 송금한 후 15일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포함 거래방식과 보고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세법조항을 경영자들이 숙지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타 멕시코 Updates

- (1) 주식 양도 또는 매 때시 양도세금으로 총매매가(Gross sales price)의 25%나 양도차익(Capital gain)의 28%를 내야한다. 양도차익은 판매가에서 인플레이션율로 조정된 구매가를 공제하여 구하는데 계산에 대한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2) 미국법인과 마킬라도라와의 거래에서 관계회사대여(차용)금 계정 또한 선급(선수)금 계정 잔액(Intercompany account balance)이 통상의 현금사이클을 넘는 경우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입에 따른 법인세 조정 또는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15%)를 추징한다.
- (3) 2007년부터 10% 종업원 이익분배(Profit sharing) 실제지급액은 지급년도 과세소득 계산시 차감한다.
- (4) 세금미납자 구제(Tax liability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2007년 12월 31일 마감된다.

미국 IRS Update

미국법인과 한국모기업 또는 관계 회사와의 거래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미국 IRS는 최근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 이전가격의 적정성검토 (이전가격연구) 여부
- 이전가격연구결과에 따라 세무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을 하여 매입액을 줄였지만 세무조정과는 별도로 당초 거래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물품대금 지급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으로 간주하여 배당금 원천징수세(10%)를 추징한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이 발생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평균 7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이자율(Federal applicable rate)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12%) 추징한다.

본 Executive Summary는 1996년부터 수시로 작성 배포 되었으며 지난 Summary가 필요하거나 본 Summary에 의문이 있으시면 저희 Choi, Kim & Park (CKP) 회계법인 (전화 (858)560-5200 이나 Email: hoonkim@ckpcpas.com) 으로 알려 주십시오. 끝.

³ 멕시코 법인세법 3.32.1 (Maquiladora)